

인천광역시고시 제2020-379호

##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(공원조성과, 032-458-7038), 인천대공원사업소(032-440-5823), 남동구청(공원녹지과, 032-453-6292)에 비치하였습니다.

2020. 10. 19.

## 인천광역시장

### 1. 결정(변경)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

### 2. 위치

-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135-3번지 일원

### 3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#### 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이승훈 역사공원	역사공원	남동구 장수동 산135-3번지 일원	45,831	감)39	45,792	인고 제117호 (2018.05.28)	

#### ○ 공원결정(변경) 사유서

공원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연희공원	◦ 면적변경(감39m <sup>2</sup> ) 45,831m <sup>2</sup> → 45,792m <sup>2</sup>	◦ 지적 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(도시계획선 변경 없음)

### 4. 지형도면: 게재 생략(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)